

서울특별시서초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(안)

의안 번호	225-
----------	------

[1994. 10. 26.]
 발의년월일 : 1994. 10.
 발 의 자 : 허명화 의원 외 4인

제 안 이유

관내 70~80%의 주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 관리가 소유자 문제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민편익을 위하여 지정 및 관리를 재정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함.

주 요 골자

1.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를 구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구 예산으로 관리하며 (안 제1조, 제2조)
2. 구 관리로 지정 또는 취소할 때는 구청장이 공고하여야 하고 (안 제3조)
3. 관리도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(안 제4조)
4. 도로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(안 제5조)
5.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 근거 마련 (안 제6조)

관련 법 규

- 사도법 (私道法) 제7조의 2

조 례 안

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

호

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초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내의 도로를 구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구 예산으로 관리하므로서 아파트 거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리도로의 정의)

1. "관리도로" 라 함은 진입로에서 단지내의 관공서, 교육기관, 공공복지 시설의 입구 까지의 도로 또는 1개의 진입로에서 타진입로까지의 연결된 폭 8m 이상 ~ 20m 미만의 도로
2. 기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구청장이 관리도로로 지정하는 도로

제3조(관리도로의 지정 및 공고) 구청장은 제2조 1항의 도로 및 2항에 의거 지정한 관리도로는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4조(관리도로의 관리범위) 관리도로의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관리도로 및 관리도로 양측보도의 재포장 및 보안등 대체
2. 관리도로의 중심선에서 양측으로 20m 이내의 상. 하수 시설에 대한 대체 및 준설
3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) 구청장은 관리도로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